

제 61회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0년 1월 17일 상오 11시 35분
2. 폐 의 : 단기 4290년 1월 17일 하오 2시 25분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5. 출석의원
 채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
 결석의원 천철수 의원
6. 출석공무원
 시장 하동현 및 각과장
 교육청 학무과장 유창덕
7. 의사일정

◆ 보고사항

- 1) 제 59회 제 3차 회의록 통과
- 2) 제 59회 제 4차 회의록 통과
- 3) 제 59회 제 5차 회의록 통과
- 4) 제 59회 제 6차 회의록 통과
- 5) 문교사회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- 6) 각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결과보고
 (가) 창동시장 관계
 (나) 재건축택 관계
- 7) 동정세 세율 - 진정 상황보고
- 8)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◆ 부의안건

- 1) 시유재산(인분 철거용 탱크 자동차) 취득의 건
- 2) 목포시 교육 위원회 직제조례 개정안 심의의 건
- 3) 목포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 조례개정안 심의의 건

8. 토의사항

◎ 제 59회 제 3, 4, 5, 6차 회의록 통과

◇서기 박 찬 대

-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하다.

◎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◇명 남 철 의원

- 목포시 교육위원회 직제조례 개정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보았으나 교육감 직무대리조례 개정안은 제2조 중 교육감 「유고시에는 교육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단 교육장 유고시에는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」로 수정할 것을 결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.

- 이유는 교육청 지출원은 사무장인 것이므로 교육감 유고시에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됨은 수시 임의 지출을 우려 않을 수 없으며 교육청은 어디까지나 교육자 본위가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.

◎ 각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결과보고

(가) 향동시장 관계

◇김 남 진 의원

- 저번 본 회의의 결의로써 향동시장 입주자 선정 및 민원서류의 부정제출과 상인간의 분규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일 그 임무에 당하던 도중 또 다시 강성심이라는 분으로부터 진정서(별지)가 들어와 새로운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.

◇서기 박 찬 대

- 강성심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를 낭독하다.

(나) 재건축주택 관계

◇김 남 진 의원

- 본 건에 대하여는 작일까지 조사를 한 바 현금 청부업자가 은신중에 있으나 수일 중에 만나게 되리라 하니 그때에 삼자가 합석하는 기회에 조사키로 하고 일단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.

◎ 동정세 세율 진정상황

◇김 성 균 의원

- 12월 30일자 상도하여 지방과장을 심방코 요담한 바 있었으나 본 건에 있어서는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실정에 부합되도록 각기 위임 하겠다는 말과 당 목포시가 4개시중의 동정운영방침이 우수하다는 찬사를 받고 귀임 하였습니다.

◎ 내무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◇정 응 표 의원

- 유천서씨로부터 제출된 청원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유씨의 대리인 황씨가 부재라 하여 내무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처결키로 하였습니다.
- 그리고 문교사회 위원회의 회부안건인 교육위원회 직제조례 개정안 및 교육감 직무대리 조례개정안은 문사위에서 결의된 안 대로 내무위에서도 통과를 보았습니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향동시장 문제에 대하여 그 처결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김 일 섭 의원

- 본 건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경위와 내용을 청취토록 할

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에 이어 칠청까지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산업과장 정 태 로

- 향동시장 관계 연고자 입주선정에 있어서는 객년(客年) 9월 8일자 개최된 정 부의장 및 각 분과위원장 등 합석한 좌담회석상에서 일인 일개 점포의 원칙을 세워 35명으로 결정을 보고 추진위원회 측 선정서에 의하여 책정을 한 바 있었는데 결국 추진위원회 측에서 일인 이개 점포를 준다는 등기만을 하였다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.

- 그리고 과반(지난번) 접수된 69명 측의 건의서 내용을 조사하였던 바 사실상 5명의 작난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각하시킨 바 있으니 여러 의원들의 심심한 검토 있으시기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작년 9월 8일자 연석회의시 연고자 대표 측에서 기만하였다는 말이 있으나 그 당시 35명을 결정할 적에 막연한 근거로 책정할 것이 아니라 공부상에 나타난 자로서 35명을 확정하였다는 말을 시장님의 입회하에 들은 바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시 측의 소홀한 처사라고 규정 않을 수 없는 것이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객년 9월 8일자 연석회의라 함은 의원의 전체회의 였든가 불연이면 전체회의에서 이 좌담회에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있었든가, 없었다면 이에 대한 법적효력 유무를 명백히 하여 주기 바란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9월 8일자 개최되었던 좌담회의 회의록 및 그 후 제출되었던 해명서 낭독요청이 있었음.

◇산업과장 정 태 로

- 회의록 및 해명서 낭독하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향동시장 문제 중 가장 중대한 문제가 강성심의 진정사건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. 본 건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박복님의 연고권 유무일 것이며 이 연고자선정시에도 박복님은 공부상에 나타난 연고자도 아닌 것이다.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연고자중 3인을 선택하여 1인 2개점포씩을 주도록 되어있었으나 강성심만이 그 혜택을 못받게 된 것이고 그 당시에 박복님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일시 이용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.

- 현금의 강성심 생활상태는 목불인견의 곤경에 처하여 있는바 여사한 문제에 대하여 제소여부는 본인의 의사여하에 달렸다 할지라도 사건이 이렇게 까지 진전되기 전에 의결부와 집행부는 합동하여 이 문제를 처결 지을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1인 1점포의 원칙을 무시하고 2점포를 대여한 처리방안 및 권리금취득문제와 강씨와 박씨간의 분규문제를 여하히 할 것인가. 집행부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망한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박복님으로부터 적립금 20만원을 받고도 즉시 사용허가권을 안준 이유를 묻는다.

◇산업과장 정 태 로

- 35인 책정 시에는 집행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실정에 통효(通曉)한 추진위원회 측의 의사를 존중한데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해명서에 의하면 신씨라는 분이 개입되어있는 것이고 강성심은 한번도 찾아온 사실조차 없었던 것입니다.

◇하 시장

- 우리가 빈약한 재정가운데서도 판자옥(판자집) 철거후의 피해자를 구원 하자는 견지에서 1인 1점포씩을 주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실정은 작일에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. 불순한 동기의 취득자는 시정하여야 될 것이며 권리양도등 사실도 용인키 어려운 것입니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2개점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소시킬 용의는 없으며, 취소후의 최후 발악 및 박복님의 부정이득을 여하히 할 것인가.

◇산업과장 정 태 로

- 강성심의 진정서 제출동기가 명백한 것입니다. 엄정한 입장에서 1인 1개 점포의 원칙대로 대여하였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인데 결국 추진위원회 회의의 기만술책에 기인하였던 것입니다. 박복님에게 허가증을 교부할 적에 신씨란 분이 나타나게 되어 그 허가증을 1주일동안 보류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신씨에게도 1점포를 마련하여 줌과 동시에 박복님에게도 허가증을 교부하였던 것입니다.

- 실은 강성심이 신씨와 박복님의 2인을 내세웠으나 배신을 당한 것이 확실한 것이며 이 양인이 연고권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취소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강성심과 박복님의 개인대 개인문제이니 의회에서는 이 이상 집행부측과 질의종결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본 건 강성심에게 혜택을 안줄 때에는 2개점포를 점유 받은 2인도 취소시켜야 될 것이다. 그리하오니 박복님분을 취소하여 강성심에게 주던지 불연이면 2인도 모두 1개점포씩 취소토록 할 것을 행정부에 건의 할 것을 동의하다.

- 곧 이어 동의 철회발언이 있었음.

◇김 남 진 의원

- 산업과장의 증언이 당연하다고 보아진다. 그리고 강성심의 손해는 공인

하는 바이나 사건자체가 재정문제가 개입되어 있고 사적문제로 보아지는 것이니 강성심과 박복님 양인관계를 본 건 소개의원인 강영락, 박두순 양 의원이 수고를 하여 쌍방조절할 수 있도록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김남진 의원의 동의대로 한다면 실질적인 면에서 강성심 측은 이대로 들을런지 몰라도 박복님 측이 불응하는 경우는 여하히 조절 할 것인가. 단 1일간의 연고라 할지라도 박복님도 연고자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김남진 의원의 소개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시킨다는 것은 공정성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것이니 부당할 것이고 하니 1인 1개 점포의 원칙대로 하던지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처결할 수 있도록 개의를 바이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본 건에 대하여 박복님은 부당한 연고자이니 박복님을 취소하고 강성심에게 돌려주는 것이 온당한 처사이라는 것이 이구동성의 부르짖음이다. 그리고 본 건 선정시에도 연고자대표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책정한 것이니 본 건 조절시에도 연고자대표와 과거의 시장관계 조사위원 등 삼자 합동으로 조절하도록 할 것을 재개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본 의원의 동의 중 소개의원 박두순, 강영락 의원을 지명한 것은 취소하고 적의 2의원을 선정할 것으로 수정한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본 건 강성심과 박복님 개인 대 개인 문제이니 의회에서 관여할 것 없이 본인들에게 미루도록 할 것을 삼개의 재청(재재개의)하다.

- 삼청없어 폐기하다.

- 각 동의 표결상황

김경인 의원 재개의 재석 15명중 가 7표로 부결되다.

정웅표 의원 개의 철회하다.

김남진 의원 동의 재석 15명중 가 5표로 부결되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본 건 진정서의 각하할 것을 선언하다.

- 오전회의 휴회 선언하다.

- 속개 선언하다.

(하오 2시 5분 현재)

◎ 목포시 교육 위원회 직제조례중 개정 조례안

◇김 경 인 의원

- 본 건 문사내무 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한 안건이오니 제반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부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◇김 창 희 의원

- 본 건 역시 문사내무 위원회에서 심심 검토한 것이니 문교사회 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표결결과 재석 15명중 가 9표로 가결되다.

◇김 성 균 의원 긴급동의

- 남교동 공설시장에 90년도 제 1기분 영업세 조정에 착수하고 있다는 말

을 들었다. 현재의 남교동 시장상인들의 실정을 상술 않더라도 추찰할 것으로 믿어지는바 금회 한번만 더 면세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리아니 금반 당 시의회에서 진정위원단 3인을 선출하여 당 지방세무서 및 사세청에 파견 절충토록 할 것을 긴급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재석 15명중 가 9표로 가결되다.

- 진정위원으로는 김경인, 이정권, 김성균 의원을 지명

◇김 창 희 의원

- 전간부 및 직원책상에 명찰을 첨부하여 어떠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과 특히 지방주사급 이상은 그 직명까지를 붙이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재건축택 관계 유천서 진정사례등은 계속하여 조사하고 차기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척방 산업에서 12일자 결재되었다는 전문이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상세한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하 시장

- 현금 중기를 주문 중에 있으니 중기작업은 금추경(금년 가을쯤)이라고 보아집니다. 척방회사 사장이 수일 후 래목할 것이니 그때에 확실한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실은 김창희 의원으로부터 교육청 사무감사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것으로

보아졌는데 언론계 등으로부터 교육감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색채가 띄웠다는 말 등으로서 안하는 것 같으나 앞으로 있을 교육위원회 경정예산 등의 필요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금일 중에 교육청에 통고하여 정부의장 및 문교사회 위원회 전원이 10일간에 공(巨)한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찬조발언이 있었음.

◇강 영 락 의원

- 교육감선거가 2월 17일경으로 절박하였다고 보아집니다. 그런다고 보아 질적에 현 교육감이 재출마한 뒤에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며 2월 말경의 결산심의와 아울러 시 본 청과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12월 중순경에 모 의원의 발언으로 예산심의와 아울러 사무감사를 실시 하자는 것이 부결되었다고 보아질 적에 강영락 의원의 발언과 같이 교육청에 국한한다는 것은 사무감사의 건설적인 기본의의를 몰각하고 모종의 흑막이 개재된 것 같은 역효과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니 2월 말경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.

- 김남진 의원 동의 표결결과
재석 15명중 가 5표로 부결되다.

◇김 삼 성 의장

- 폐회 선언하다.

(하오 2시 35분)

- 끝이어 폐회식 거행하다.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

단기 4290년 1월 18일

시의원 김 상 태

시의원 김 일 섭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